

수수료 자동정산 처리규정(동의서)

- 1조 【 】 이 규정은 화물운송을 한 차주가 운송주선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관하여, 차주가 365All Biz Truck에 수수료를 예치하고, 365All Biz Truck는 차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가지고 차주를 대신하여 운송주선사에게 선착불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자동정산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65All Biz Truck: 스마트폰 어플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물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엘아이텍를 말한다.
 2. 차주: 운송주선사가 올린 화물을 365All Biz Truck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
 3. 운송주선사: 365All Biz Truck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오더의 등록】** ①자동정산 처리하는 오더는 선착불건이며, 수수료로 0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하여 등록된 오더에 한한다.
 ②수수료 금액을 표시하여 선착불건으로 오더를 등록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자동정산 처리한다.
 ③선착불건 오더 일지라도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운송주선사는 '수수료 협의' 로 오더를 등록할 수 있다.
- 제4조 **【선착불건수수료의 자동정산】** ①365All Biz Truck는 차주를 대신하여 운송주선사에게 선착불건 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주가 365All Biz Truck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자동정산 한다.
 ②365All Biz Truck는 배차완료와 동시에 차주의 예치금에서 선착불건 수수료를 공제한다.
 ③지불방식, 인수증, 수수료협약오더, 또는 선착불건이라도 수수료가 표시되지 않거나 수수료가 0원인 오더는 자동정산 처리하지 않는다.
 ④배차취소 또는 오더취소 된 경우, 365All Biz Truck는 즉시 공제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차주의 예치금에 합산한다.
- 제5조 **【배차신청】** ①차주가 365All Biz Truck에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이 수수료에 미달되는 경우에 차주는 '선착불건 수수료 자동 정산되는 오더에 대하여 배차신청을 할 수 없다.
 ②자동정산 대상이 아닌 오더에 대하여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차주는 배차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 **【수수료의 예치】** ①차주는 365All Biz Truck가 차주 각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②365All Biz Truck는 차주가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예치하면 10분 이내에 차주의 예치금을 합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전산망의 장애나 점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나 점검이 완료된 후에 처리한다.
 ③365All Biz Truck는 차주 본인이 예치금 잔액과 입금, 출금(공제) 등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7조 **【가상계좌 입금수수료의 부담】** ①차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할 때마다(1회 입금할 때마다) 가상계좌 입금처리 수수료로,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200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각 200원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금수수료는 365All Biz Truck와 금융기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때에 365All Biz Truck는 변경사항을 별도로 공지하여야한다.
- 제8조 **【예치금의 반환】** ①차주가 예치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365All Biz Truck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365All Biz Truck는 차주의 정보이용료 자동출금 계좌로 제1항의 예치금을 반환한다.
 ③예치금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365All Biz Truck가 부담한다.
- 제9조 **【소요비용,이자 등】** ①365All Biz Truck는 차주나 운송주선사에 대하여 수수료 자동정산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365All Biz Truck는 차주에 대하여 예치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365All Biz Truck는 운송주선사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때부터 운송주선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수수료수령계좌 등록】** ①운송주선사는 365All Biz Truck에게 선착불건 수수료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고, 계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운송주선사가 선착불건 수수료 수령계좌를 등록한 후, 변경등록이 없으면 365All Biz Truck는 계속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운송주선사의 수수료 수령계좌로 수수료를 송금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운송주선사는 365All Biz Truck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선착불건 수수료 수령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운송주선사는 수수료 자동정산 오더를 등록하거나 365All Biz Truck에 자동정산 처리를 요구할수 없다.
- 제11조 **【수수료의 지급】** ①365All Biz Truck는 매주 화요일에 그전 1주일간(월요일 00:00~일요일 24:00)의 수수료내역을 집계하여 운송주선사의 등록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일괄(전체 수수료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송금하고, 운송주선사는 365All Biz Truck에 대하여 일괄처리로 인해 늦어지는 기간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운송주선사는 365All Biz Truck에 대하여 일괄 송금하는 수수료를 오더 건별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오더 건마다 송금인 명의표시를 다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 제12조 **【자동정산 대상 업무범위】** ①365All Biz Truck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 금액만을 자동정산 처리한다.
 ②세금계산의 발행 사항이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송주선사 사이에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3조 **【세금계산서 발행 등】** ①운송주선사는 '수수료 자동 정산된 오더'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운송주선사가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때에는 운송주선사는 차주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차주는 차주가 운송주선사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는 대신 365All Biz Truck가 차주의 사업자 정보를 운송주선사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④365All Biz Truck는 운송주선사가 차주의 사업자정보를 프로그램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차주 및 운송주선사에 대해 어플 및 운송주선사프로그램을 통해 공지한 수 적용하며,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 따라 선착불 수수료 자동정산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귀사에 위임합니다.

사 : 주식회사 엘아이텍
대표이사 : 연 정 은

동의 및 서명 : 201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